



보도시점 2023. 4. 17.(월) 11:00
4. 18.(화) 조간

배포 2023. 4. 17.(월) 09: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4월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공포 3개월 후 시행: 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하여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규정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 메추리 18건, 칠면조 3, 거위 2, 타조 1, 꿩 1, 기러기 3

둘째,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하였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셋째,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2023년 4월 18일)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어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법제총괄>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경일 (044-201-2519)
<AI 총괄>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 (공포일) '23. 4. 18.

□ (시행일) '23. 7. 19.(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과 ②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23.10.18.)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①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 강화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의10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적용예외)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 적용 확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 CCTV 설치확대 : (기존)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 → (변경)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②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별표2의2	○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u>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u> * (적용예외) ①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③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별표2의4	○ 가금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의무,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 기자재·소모품 방치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등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가금을 입식